



통보

다음 고지는 10.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

1.	통보국가: 타이완, 평후, 킨먼 및 마추의 개별관세영역 해당할 경우,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3.2 및 7.2):
2.	담당기관(Agency responsible): 대기환경부 환경부
3.	조항 2.9.2 [X], 2.10.1 [], 5.6.2 [X], 5.7.1 [], 3.2 [], 7.2 [], 기타에 근거해 통보:
4.	해당제품(해당할 경우 HS 또는 CCCN, 그렇지 않으면 국정세울 제목. 해당할 경우,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 수소염화불화탄소, HCFC(수소염화불화탄소)를 함유한 제품 또는 장비
5.	제목(페이지수, 언어, 열람 방법): 수소염화불화탄소 소비 관리 규정 개정안 초안(17페이지, 영어), (14 페이지, 중국어) 통보 문서 열람 링크 및/또는 요청 시 사본 제공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 의견 수렴처: WTO TBT 질의처, 이메일: tbtenq@bsmi.gov.tw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TPKM/25_04194_00_e.pdf https://members.wto.org/crnattachments/2025/TBT/TPKM/25_04194_00_x.pdf
6.	내용: 환경부는 "수소염화불화탄소 소비 관리 규정"의 조항을 개정하고, 해당 제목을 "수소염화불화탄소 관리 규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개정안 초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HCFC 함유 제품 또는 장비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HCFC 및 소비량에 대한 정의를 개정한다. 2. HCFC 소비 및 생산에 대한 관리 일정과 사용 제한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일정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3. 실질적인 필요를 보다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단일 연간 할당 절차를 채택하여 현재 할당 시스템을 간소화한다. 4. 몬트리올 의정서 결의에 따라, 소비량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허용된 면제 사용에 대한 신청 절차를 추가한다. 5. 면제 사용을 위해 수입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수입 및 보고 요건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다. 6. 사전 승인이 없는 HCFC 함유 제품 또는 장비를 수입하는 것에 대한 기존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한다. 7. 승인 받지 않고 수입된 HCFC 또는 HCFC 함유 제품 또는 장비를 판매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을 통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한다.

7.	적용할 경우,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라벨링, 인체 건강 및 안전 보호, 동식물 생명과 건강의 보호, 환경 보호, 국제표준과의 조화,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8.	<p>관련 문서:</p> <p>정부 관보, Vol. 031, No. 108, 2025-06-12.</p> <p>https://gazette.nat.gov.tw/egFront/e_detail.do?metaid=157891</p>
9.	<p>채택 예정일: 추후 결정</p> <p>시행 예정일: 추후 결정</p>
10.	<p>의견 제출:</p> <p>의견 마감일: 2025-08-26</p> <p>[X] 통보일로부터 60일</p> <p>통보 관련 의견 처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p> <p>WTO TBT 질의처 대만 표준검험국 경제부 No. 4, Sec. 1, Jinan Rd., Zhongzheng Dist. Taipei City 100, Taiwan 전화: +(886-2) 23431700#1566 팩스: +(886 2) 23431804 이메일: tbtenq@bsmi.gov.tw</p>